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625
-----------	------

2026년 4월 22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4월 6일, 최재란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이 단순한 금융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짐.
- 현행 조례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기존의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제·금융 역량을 갖추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여 금융교육의 범위 확대를 도모함.
- 나. 현행 조례 본문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해당 용어에 대해 일괄 수정함(안 제1조~제9조).
- 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 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6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625호로 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금융’에 국한되었던 교육 범위를 ‘경제’ 영역까지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경제교육지원법」과의 체계성을 확보하

며,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서울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 역량을 함양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간편결제·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핀테크¹⁾ 산업의 급성장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 이해와 합리적 금융 생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금융거래의 일상화로 금융사기 및 불법 금융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경제교육지원법」은 경제교육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²⁾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 반면에 현행 조례는 “금융교육”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념에 대한 기초 이해 없이 금융 지식만을 단편적으로 다

1) 핀테크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IT)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산업의 변화를 아우르는 말을 뜻함. 구체적으로 모바일,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IT 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어린이 누리집, 생활 속 금융 ‘쑥쑥 금융상식’, <https://www.fsc.go.kr/kids/kd030201>

2)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루게 된다는 점에서 상위법에서 규율하는 경제교육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³⁾에 따르면, 초등학생(6학년) 61.5점, 중학생(3학년) 51.9점, 고등학생(2학년) 51.7점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6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⁴⁾
 - 해당 조사에서는 물가·수요·공급·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 및 원리 관련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게 측정된 반면, 전자상거래·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금융 관련 실생활 정보의 습득량에 비해 경제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인바, 현행 조례가 제시하는 “금융교육” 만으로는 학생이 실생활에서 경제·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조례의 명칭과 그 적용 범위를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제교육지원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경제 관련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금융교육 관련 조례는 총 14개가 시행 중이며, 이 중 8개 시·도교육청은 2024년 이후 제명에 「경제·금융교육」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그 내용을 조례 안에 반영하고 있음.

3) 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2.19.,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dwgREtTrD7an7daH9DmqVwQs.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72704&menuNo=4010100

4)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초·중·고 학생 모두 점수가 하락(초△3.9, 중△6.3, 고△5.0)한 결과임.

- 이와 같은 경향은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단순한 금융 상식 및 기법의 전달을 넘어 기초 경제 원리와 개념을 포괄하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입법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표-1] 전국 시·도교육청 금융교육 관련 조례 현황⁵⁾

순번	법령명	시행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4. 6. 7.
2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5. 11. 6.
3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3. 9. 25.
4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5. 3. 10.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4. 11. 11.
6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4. 7. 11.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4. 2. 16.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4. 12. 30.
9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4. 7. 18.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9. 29.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1. 7. 22.
12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1. 9. 27.
13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2022. 12. 22.
14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2. 30.
비고	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는 없음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 및 본문의 용어 정리(제1조~제9조)에 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 전반에 걸쳐 “금융교육”을 “경제·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교육 관련 조례안 검색(2026.4.1.)결과 반영

금융교육”으로 수정하였음.

- 이는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⁶⁾에 따른 경제교육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교육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즉, 조례 전반의 용어를 ‘경제·금융교육’으로 개편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경제교육지원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학생들이 단순한 금융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회 구조와 시장 원리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규범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어의 정비는 체계상·내용상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 정비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현행 3년 주기의 ‘시행계획’ 중심체계를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이원화하여 계획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분리하는 구조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책 설계 방식으로 기본계획에서 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시행계획에서는

6) 「경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연도별 세부 사업과 예산, 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이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⁷⁾과 같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중장기 계획들과 주기를 맞추어 재정계획과 정책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임.
- 이에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등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명시하고, 제4호에서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책의 기본계획의 실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제4조는 중장기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계획 체계로의 전환 및 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그 내용 및 구성에 관하여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3) 교육자료 보급에 관한 검토(제5조)

- 안 제5조는 조문 제목을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에서 “교육자료 보급”으로,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제공 목적을 “금융교육의 활성화”에서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으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⁸⁾에 따

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2026~2030, 2026.1.1.) - 유·초·중등교육의 지출계획 및 수요를 중장기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3.8.),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4451&menuNo=200218&c1Cd=&sdate=&edate=&searchCnd>

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965억 원에 달하며,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의 피해액이 전년 대비 139억 원이나 폭증하는 등 저연령층의 피해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임.

- 또한, 20대 이하 피해자의 대다수(85.2%)가 사회 경험 부족을 악용한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연령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타 연령층은 연도별 증감에 따라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대 이하’ 연령층은 2016년 3,209건에서 2023년 8,886건으로 약 177%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20대 이하’의 수치(8,886건)는 과거 주된 피해층이었던 40대(2,325건)나 50대(3,149건)의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도 20대 이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 노출과 금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2] 10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현황⁹⁾ (단위 : 명)

구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16	3209	3735	4542	3834	1261	459
2017	5273	4887	6473	5412	1807	407
2018	4480	6483	9842	9313	3389	625
2019	3855	6041	10264	11825	4617	1065
2020	5323	4406	7704	9217	4188	843
2021	5459	3299	6755	9564	4778	1127
2022	6805	1821	3413	5378	3462	953

[=1&searchWrd=%EB%B3%B4%EC%9D%B4%EC%8A%A4&pageIndex=5](#)

9) 공공데이터포털(경찰청 제공), 10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91221/fileData.do>

2023	8886	1621	2325	3149	2144	777
2024	5352	2156	3200	4828	4256	1047
2025	5770	2510	2992	4794	5801	1493

-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대리 입출금 등의 명목으로 접근한 범죄 조직에 의해 이른바 ‘대포통장’,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을 제공하거나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¹⁰⁾.

특히 디지털 금융환경의 확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 또한 다양화·지능화되는 추세임.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 등 학생들이 단순한 소비·저축 등 자산관리 자산관리 차원의 금융교육을 넘어, 금융 매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로를 사전에 이해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서의 금융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는 표준교안의 범위를 금융사기 및 금융범죄 예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 개선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됨.

4)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현행 조문 제목 “시범학교 지정·운영” 을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 으로 변경하고, 본문에서 “금융교육 시범학교” 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로 개정하였음.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3.19.),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불법도박·마약거래유인 등)을 차단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4757&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B2%AD%EC%86%8C%EB%85%84&pageIndex=1>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¹¹⁾은 연구학교를 ‘정책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구분하면서, ‘시범학교’를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시범학교”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구학교”의 한 유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이를 독립된 학교 유형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음.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범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연구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상 용어가 실제 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
- 안 제6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를 실제 운용 방식에 맞게 연구학교를 주축으로 정비하는 한편, “선도학교”¹²⁾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연구학교에서 축적된 성과와 우수사례를 일반 학교 현장으로 확산하는 단계까지 조례상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제·금융교육의 연구·개발부터 학교 현장 전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법적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써,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¹³⁾의 기본방향과도 그 취지를 같이하는

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2008. 7. 30.>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12) 주- ‘선도학교’는 발굴된 우수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이라 할 것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 및 학교 현장에서의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로 판단됨.

[표-3] 2024~2026 최근 3년간 금융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현황¹⁴⁾

지원청	학교명	분야	지정기간	비고
동부	면목중학교	경제(노동)·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	'26.3.1.~'29.2.28.	교육부 요청
강서양천	염경중학교	경제(노동)·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	'26.3.1.~'29.2.28.	교육부 요청
계		중학교 2교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 으로 회신하였음. (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 4. 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3)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의원 요구자료 603번, 26.4.14,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실시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금융에”를 “경제와 금융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교육”이란”을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를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교육 시책”을 “경제·금융교육 시책”으로, “금융교육이”를 “경제·금융교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교육의”를 “경제·금융교육의”로,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경제·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교육”을 각각 “경제·금융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을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재원 조달”을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을“(교육자료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으로, “금융교육에”를 “경제·금융교육에”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시범학교 지정·운영)”을“(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교육의”를 “경제·금융교육의”로,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범학교”를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한다.

제7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9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u> <u>조례</u></p>	<p><u>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u> <u>활성화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금융교육</u>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u>금융</u>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금융교육</u>”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u>금융교육</u>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u>금융교육</u>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u>금융교</u></p>	<p>제1조(목적) ----- <u>경제·금융교육</u> ----- - <u>경제와 금융</u>에 ----- ----- -----.</p> <p>제2조(정의) ----- -----.</p> <p>1. “<u>경제·금융교육</u>”이란 「<u>경제교육지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경제교육과</u> --- 올바른 인식 제고와 <u>금융생활</u> 태도를 함양하게 하고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 ----- - <u>경제·금융교육</u> 시책----- <u>경제·금융교육</u>이 ----- -----.</p> <p>② ----- ----- <u>경제·</u></p>

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금융교육-----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 경제·금융교육의 ----- 경제·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5년-----
-----.

② ----- 기본계획-----
-----.

1. 경제·금융교육-----

2. 경제·금융교육 -----

3.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4. 기본계획-----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
5. ----- 경제·금융교육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자료 보급) -----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 경제·금융교육에 -----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제6조(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 경제·금융교육의 -----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② -----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제7조(교원연수 지원) ----- 경제·금융교육-----.

제8조(위탁) ① ----- 경제·금융교육-----.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경제·금융교육-----.

<삭제>